

입찰 및 현장 설명서

현장명 고려산업(주)부산공장 건물(시설물 포함) 철거공사

<p>개 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 사 명 : 고려산업(주)부산공장 건물(시설물 포함) 철거공사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4년 05월 28일("갑"과"을" 협의가능) - 결재조건 : 당사 지급기준(협의 가능) - 입찰 및 현장설명회 : 2023년 10월 30일(월) 오전 10시(2층 회의실) 참가자격 - 현장설명 지명을 받은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물 - 법인인감(사용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위임장, 지명원(기 제출업체 제외) - 서류마감 : 2023년 11월 06일(월) 17시까지(당사 도착분에 한함) - 발 표 : 2023년 11월 10일(금) 17시 이전 - 제 출 처 : 본사 - 부산시 사상구 새벽시장로 21(감전동) 고려산업주식회사 회사 인감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방문 또는 우편) - 도면 및 내역열람처 : 부산시 사상구 새벽시장로21(감전동 127-17) - 현장 사무소 : 고려산업(주) 부산공장 안전관리팀(051-600-5064)
<p>공 통 사 항</p>	<p>1. 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안전관리, 산재, 고용, 건강, 연금, 퇴직공제부금(10억이상일때) '공과잡비 등)을 포함한다. - 부가세를 포함하여 견적 제출한다. - 본 공사는 공사 및 현장설명서, 내역서, 설계도,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견적하고,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을"은 계약후 즉시 착공하여야 하며, 공정별 공사 착수시기는 현장여건에 맞춰 "갑"의 통제에 따르도록 한다. - 현장내 반입되는 공사용 모든 자재는 KS규격품 또는 그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각종 시험항목 및 시험비용 포함조건 임.) - 현장내에 반입된 자재는 "갑"의 승인없이 현장밖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입된 자재의 취급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한 손실 등은 "을"이 책임진다. - 지급 자재를 제외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장비비 일체를 포함한다. - 공사 중 발생하는 폐자재 및 폐기물은 지정장소에 소운반 및 적절한 처리를 해야하며, 이를 불이행할시 통보 후, "갑"이 임의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 - 공사 민원으로 인한 작업시간 조정(주말,공휴일)에 따라 추가 공사비 지급은 없는 조건임. - 공사 계획공정이 지연 될 경우 "갑"은 "을"에게 공정지연에 대한 독려를 할 수 있고, 즉시 공정 지연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갑"이 시행하고 투입 공사비는 "을"이 전액 부담한다. -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자재 수급곤란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발주금액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사유로 '납품·시공지연 및 부실시공에 의한 피해발생시 "을"이 전액 책임변상하는 조건임. - 자재의 관리 및 정리정돈, 청소 등은 "을"이 시행하며 자재정리의 범위는 공사완료 후 현장내 지정장소에 소운반(폐기물 처리포함) - 석면 철거시 농도 측정을 포함한다. - 관리감독자 및 작업책임자는 근로자 작업시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시 '업무처리와 민·형사상 책임 및 보상은 100% "을"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 기성은 1개월간의 작업물량이며 기성청구일은 매달말일 기준으로 마감하며 마감물량의 90%를 마감후 30일 이내 지급한다. 또한 기성청구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시 부당한 처리도 "을"측이 감수한다. - 낙찰기준 최저가 낙찰 및 적격심사를 기준으로 한다. '(단, 재무상태 및 과거실적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 한다)

1.일반사항

원사업자인 고려산업을 "갑"이라 칭하고, 수급사업자를 "을"이라 칭한다.

(1) 적용 범위

이 현장설명서는 고려산업이 발주한 공장 내 건축물 철거공사에 있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현장설명서이다.

(2) 공사 범위

-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27-17, 127-14번지
- 공사대상 : 공장 내 건축물, 공작물, 석면(농도측정 포함)철거 등 지상의 모든 지장물 철거 및 상차, 반출 및 상차, 반출(지하, 바닥제외)
- 기타사항 : 전기,통신,도시가스,상수도,분뇨 처리(고려산업과 협의)

(3) 작업준비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수급인의 기본 임무

수급인은 시방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에 민원사항 발생시 수급인이 처리하되 억지 민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3)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기타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비산방지,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해체시공 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 수속을 마쳐야 한다.
(철거, 멸실신고, 멸실등기에 대한 모든 제반 업무 및 서류 등)

5)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대관업무 포함)

"을" 건축물 내.외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전화,가스,유류,수도,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폐관, 폐전신고 등의 대관업무를 "갑"의 위임을 득하여 처리한다.

6)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8)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에 대한 신고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을 포함하는 건축물의 해체. 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석면 해체. 제거작업 허가 신청서」를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1) 석면 해체, 제거 작업계획서
- 2) 석면 해체, 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서류
- 3)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서류

(4) 보고

- 1) 수급인은 작업인력, 투입장비 등 공사실시 상황을 당일, 익일계획 등을 기록한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수급인은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사진촬영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대한 관한 공사 착공전, 공사중, 준공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준공계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6) 공사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1) 수급인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2)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
반
사
항

현장명 고려산업(주)부산공장 건물(시설물 포함) 철거공사

일 반 사 항	<p>3) 공사 종사원이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p> <p>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p>
	<p>(7) 해체공사계획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견적에 제외한다.</p> <p>단, "을"은 (7)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 심의 및 승인을 득하고 건물과 시설물 철거를 진행한다.</p>
	<p>(8) 해체 및 철거</p> <p>1)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한다.</p> <p>2)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한다.</p> <p>3) 해체건물의 종류 및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p> <p>4)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의한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p> <p>5)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p> <p>6)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p> <p>7)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도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p> <p>8)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p> <p>(9) 환경 및 안전대책</p> <p>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p> <p>2) 소음방지대책 건설기계의 채택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한다.</p> <p>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p> <p>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5) 석면비산방지대책</p>

현장명 고려산업(주)부산공장 건물(시설물 포함) 철거공사

일 반 사 항	<p>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조각이나 부스러기 등은 폴리비닐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 운반되어야 하며 포대에는 “석면함유물질” 등의 표기를 하여 허가된 처리업자에 의하여 운반 및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p> <p>6) 안전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사중에는 도로 및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수리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유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등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 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p>7) 석면 취급에 대한 안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에 대한 위험성 및 작업의 위험성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한다. -해체, 제거작업 관리감독 및 작업팀 안전회의 및 의견수렴 반영한다. -작업계획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호구를 지급한다. -추락방지 안전시설(이동식 틀비계, 안전벨트 걸이대)을 설치한다. -해체, 제거방법 작업수칙을 준수한다. -작업장내에서는 흡연, 음료, 음식물의 섭취를 금한다. -작업구역에 있는 모든 작업자는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한다. -작업중 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사고 발생시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긴급조치를 취한다.
------------------	---

현장명 고려산업(주)부산공장 건물(시설물 포함) 철거공사

특 기 사 항	<p>2. 특기사항</p> <p>-철거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27-17, 127-14번지</p> <p>-철거건물 : 상기부지내의 모든 지상, 지하 구조물, 시설물 등 본공사 시행에 지장이 되는 모든 부산물.</p> <p>-발주자인 고려산업(주)를 "갑" 이라 칭하고 수급자인 하도급자를 "을" 이라 칭한다.</p> <p>-이 현장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대관업무 및 각종신고포함 - 각종 증명발급, 확인 및 인.허가, 멸실등기 업무 포함) 변경된 건축물해체(철거)허가 절차에 따른 모든 대관 인.허가업무 포함</p> <p>-본 공사의 수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 해체, 제거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석면폐기물을 철거 및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철거업체는 해체, 철거공사와 관련한 법률(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을 준수하여야 한다.(철거관련 비산먼지,특정공사업무포함)</p> <p>(2) 철거업체는 공사 주변의 안전 확보,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p> <p>(3) 철거업체는 공사현장 주변 매설물(가스, 수도, 통신, 전기, 분뇨 등) 을 조사하여 "을" 의 부담으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및 처리한다.</p> <p>(4) 상수도는 공사중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현 정화조 분뇨물은 별도 처리한다.</p> <p>(5) 진출입로는 항상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체증과 통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p> <p>(6) 철거업체는 수작업과 고소작업을 최소화하고 장비사용 시 주변 안전 및 민원에 만전을 기한다.</p> <p>(7) 해체 공사중 분진, 소음을 최소화 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 한다</p> <p>(8) 철거업체는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며, 민원발생시 "을" 의 부담으로 해결하며, 중대민원발생시 "을"의 부담으로 해결하고 "갑" 과 협의하여 철거공법을 수정한다.(공법 변경에 따른 금액 변동없음)</p> <p>(9) 해체시 소음방지를 위해 브레카작업을 금하며 무진동 작업을 한다. 또한, 파편 등 낙하물이 현장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작업가설 및 위험방지대책을 한다.</p> <p>(10) 폐기물처리는 처리업자의 허가증을 확인하고 법령에 맞게 처리한다.</p> <p>(11) 주변 민원발생에 따른 모든 대관업무 및 대민업무는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을" 이 처리한다.</p> <p>(12) 지하구조물철거 후에는 안전 덮개 및 안전 휀스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한다.</p> <p>(13) 철거대상물에 포함된 고철, 비철, 전선류로 구분하고 고철은 길이 1.5m 및 200kg이내로 절단한다. *철거부산물(폐콘,폐아스콘,혼합폐기물,폐목재,합성수지 등) 덤프 등의 운반처리비는 철거물량을 단가에 반영하여 견적한다.</p> <p>(14) 발추처의 재산세 부과 여부로 인하여 2024년 5월 28일까지 멸실등기 완료한다.</p> <p>(15) 석면해체 · 제거 공사</p> <p>"을" 은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있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제반사항에 따라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구조, 층수, 면적, 평면, 주변환경 등 작업 전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2) 작업장 주위에 관계자의 출입통제를 위한 경고표지판, 위험표지띠를 설치한다. 3) 건물주위를 따라 바닥 폭 3m의 비닐시트를 설치한다. 4) 건물 외벽을 따라 외줄 비산방지 비계를 설치한다. 5) 지붕재 제거전 습윤상태를 유지(살수기이용 습기를 분사하여 분진발생 억제)한다. 6) 건물 외벽 양방향에 이동식 틀비계 및 안전벨트 걸이대, 안전로프를 설치한 후 작업한다. 7) 한장씩 못을 제거하면서 해체한다. 8) 높은 지붕은 크레인으로 하역하여 포장 후 지정장소로 슬레이트를 운반한다. 9) 지붕 및 벽체에서 제거된 슬레이트를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위한다. 10) 일정분량만큼 비닐시트로 포장, 밀봉하고 "석면유해물질" 표시 부착 후 보관한다. 11) 점심시간, 휴식시간 등에 흡연, 음식물 섭취를 위하여 보호의를 탈의할 시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탈의한 보호의는 밀봉하여 비닐봉투에 담아서 보관한다. 12) 일일작업 완료 후 건물주위의 비닐시트 위를 해파진공청소기로 청소, 두겹으로된 불침투성 비닐주머니에 사용한 비닐시트를 넣고 밀봉하여 "석면유해물질" 표시 스티커를 부착한 후 지정 장소에 보관한다. 13) 보관된 석면 폐기물은 석면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운반, 처리한다.
------------------	---